

의안번호	제 523 호
의 결 연 월 일	2013년 월 일 제 323 회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3년 8월 2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23
----------	-----

제출연월일 : 2013년 8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개발기관·기업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자 건립하는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과 관련된 연구원에게 숙박시설 제공
  -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에게 회의실, 벤처연구실, 공동장비실 및 편의시설 제공
- 센터의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탁 관리 규정 마련
  -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기간은 연장 가능함
-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센터 시설 사용자에게 대한 이용료 산정
  - 시설 이용료 또는 시설 임대료 면제 가능 범위 제정
-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도·감독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기업에게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및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연구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원군 오송읍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에게 벤처연구실 제공
2.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에게 공동장비실 제공
3.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에게 회의실 제공
4.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과 관련된 연구원에게 숙박시설 제공
5.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기업에게 그 밖에 편의시설 제공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이용료 징수)**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용료 이외의 시설 임대료 등 그 밖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 이용료 또는 시설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① 센터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위치)에 규정한 “청원군 오송읍”을 2014년 7월 1일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으로 한다.

[별 표]

## 시설 이용료

### 1. 회의실

시설명	규모 (m <sup>2</sup> )	시간당 이용료	비고
대회의실	713	58,000원	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 사용으로 본다.
중회의실	102	20,000원	
소회의실	65	13,000원	

### 2. 게스트하우스

구분	면적(m <sup>2</sup> )	1일 이용료	1개월 이용료
1인실	22	40,000원	400,000원
4인실	47	80,000원	800,000원
특실(침실 2실)	45	100,000원	1,000,000원

#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서

## 1. 사업개요

- 건립위치 : 청원 오송 연제 661(오송 침복단지 편의시설구역)
- 공사기간 : '11. 12. ~ '13. 7. / 사업비 : 384억(건축비 356, 부지 28)
- 사업규모 : 부지 18,645m<sup>2</sup>/연면적 20,338m<sup>2</sup>(지하1층 지상 7층)
- 주요시설 : 벤처연구실, 게스트하우스, 회의실, 공동장비시설 등

## 2. 비용 발생 요인

-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운영비 보조

## 3. 관련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체

-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행정재산관리 위탁  
- 센터 기능별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로 구분하여 운영
- 시설임대료 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규정된 사용료 예정  
가격으로 산정(공개경쟁 입찰로 인한 수입증대분은 미반영)

### 나. 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13	'14	'15	'16	'17	총계
운영비	393.5	1,346.6	1,361.3	1,376.0	1,390.0	5,867.4

### 다. 재원조달방안

- 임대료 등 센터 운영 자체 수입
- 매년 센터 위탁운영지원비 당초예산 확보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장 정 성 업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13년)	2차년도 (‘14년)	3차년도 (‘15년)	4차년도 (‘16년)	5차년도 (‘17년)	계	
<b>세 입</b>	393.5	1,346.6	1,361.3	1,376.0	1,390.0	5,867.4	
임대료	333.4	1,128.4	1,179.1	1,229.9	1,280.7	5,151.5	
회의실	12.4	65.8	81.9	98	114.1	372.2	
게스트하우스	92.7	312.1	346.7	381.4	416.1	1,549	
벤처연구시설	87.6	328.5	328.5	328.5	328.5	1,401.6	
편의시설	140.7	422	422	422	422	1,828.7	
운영비 보조(도비)	60.1	218.2	182.2	146.1	110.0	716.6	
<b>세 출</b>	393.5	1,346.6	1,361.3	1,376.0	1,390.7	5,868.1	
인 건 비	116.4	421.2	421.2	421.2	421.2	1,801.2	
일반경비	277.1	925.4	940.1	954.8	969.5	4,066.9	
<b>재원 조달</b>	407.9	1,404.2	1,418.9	1,433.6	1,448.3	6,112.9	
의존 재원	소 계	74.5	275.8	239.8	203.7	167.6	961.4
	도비 지원	74.5	275.8	239.8	203.7	167.6	961.4
자체 수입	소 계	333.4	1,128.4	1,179.1	1,229.9	1,280.7	5,151.5
	임대료	333.4	1,128.4	1,179.1	1,229.9	1,280.7	5,151.5
	회의실	12.4	65.8	81.9	98	114.1	372.2
	게스트하우스	92.7	312.1	346.7	381.4	416.1	1,549
	벤처연구시설	87.6	328.5	328.5	328.5	328.5	1,401.6
	편의시설	140.7	422	422	422	422	1,828.7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드는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료·수익료 등의 산정)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수익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공유재산 평정(評定)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